

2015.11.19.(목) ~
11.20.(금) / 2일간

제27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



장 성 군 의 회

목 차

1.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6
2.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
3. 장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
4. 장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
5. 장성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
6.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복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
7.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· 10
8.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· 10
9.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
10.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
11.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
12. 장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14

13. 장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	14
14.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	15
15. 장성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	16
16. 2016년도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계획안	17
17.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	17
18. 장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	19
19. 장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21
20. 장성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	22
21. 계광·안정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	23

심사결과

의안명	심사결과
○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	원안가결
○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○ 장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○ 장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○ 장성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○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복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○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○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하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○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	원안가결
○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○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○ 장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안	원안가결

의 안 명	심사결과
○ 장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	원안가결
○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○ 장성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	원안가결
○ 2016년도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계획안	원안가결
○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	원안가결
○ 장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	원안가결
○ 장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○ 장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수정가결
○ 계광·안정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	원안가결

주요내용

1.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

- 발의일자 : 2014. 11. 12.
- 발 의 자 : 김옥, 김희식 의원(의회운영위원회)
- 제안이유
 - 2014. 11. 21. ~ 2015. 11. 20.까지 장성군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,예산집행상황 등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면밀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고,잘못된 사항은 시정·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함.
- 주요내용
 - 감사기간 : 2015. 11. 30 ~12. 8.(9일간)
 - 감사방법 :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
 - 대상기관 :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
 - 대상사무 :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
- 법적근거
 -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
 - 장성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
 -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
- 「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2조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1차 본회의 / 2015. 11. 19.)

2.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15. 11. 11.
- 제출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“2016회계연도” 부터 지방보조금 사업비는 조례에 근거하여 지출이 가능하므로 지출근거 조례가 없는 지방보조 사업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지출근거 마련
- 주요내용
 - 지방보조사업 목록 구체적 명시(안 제4조2항)
 - 분야별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
- 법적근거
 - 「지방재정법」, 지방보조금 관리기준(행정자치부 예규 제6호)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11. 20.)

3. 장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15. 11. 11.
- 제출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요건 등에

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게 개정

▪ 주요내용

-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제2항부터 제5항 “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” 구성요건을 준용(안 제2조)
- 근거 법률 조항 변경(안 제1조)
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70조 →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제3항

▪ 법적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(법률 제12687호, 2014.11.29. 시행) 제60조3항

▪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11. 20.)

4. 장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▪ 제출일자 : 2015. 11. 11.

▪ 제출자 : 장성군수

▪ 제안이유

-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개정에 따라 근거법률 조항 및 관련 문구 수정 등 기타 미비사항 보완

▪ 주요내용

- 조례 제명 변경(장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→ 장성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)
- 근거 법률 조항 변경(안 제1조,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 →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5조 및 제6조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)

- 법적근거 :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11. 20.)

5. 장성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15. 10. 30.
- 제출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- 규제개혁 과제로서 위탁기간을 확대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 개선
- 주요내용
 - “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” ⇒ “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. 다만,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할 경우에는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.” (안 제20조제5항)
- 법적근거 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, 동법시행령 제19조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11. 20.)

6.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15. 10. 30.
- 제출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- 규제개혁 과제로서 위탁기간을 확대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 개선

- 주요내용

- “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” ⇒ “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. 다만, 수의계약으로 관리 위탁을 할 경우에는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.” (안 제20조제3항)

- 법적근거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, 동법시행령 제19조
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11. 20.)

7.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15. 10. 30.

- 제출자 : 장성군수

- 제안이유

- 임권택 시네마테크 조성계획에서 별관동 건축 취소로 조례의 별관동 부분 삭제

- 주요내용

- 시네마테크 시설(안 제4조제3호), 시설사용료 징수(안 제13조제1호), 시설 사용료(별표 3)의 별관동 부분 삭제

- 법적근거 : 「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」
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11. 20.)

8.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15. 10. 30.

- 제 출 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- 규제개혁과제로서 65세 이상 노인, 한 부모 가족,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북한이탈주민 등 소외계층에게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
- 주요내용
 -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우선 대상자를 장애인에서 65세 이상 노인, 한부모가족, 국가유공자, 독립 유공자, 북한이탈주민까지 확대(안 제4조)
- 법적근거
 - 「노인복지법」 제25조
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5조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
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 제2호
 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류」 제26조의 제3호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11. 20.)

9.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15. 11. 11.
- 제 출 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-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른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
- 주요내용

- 이용 대상 및 이용료 명시(안 제5조, 제6조)
- 위탁 운영시, 수탁단체 자격 및 위탁기간 등(안 제7조)
- 수탁자의 재산관리 의무 및 세입세출예산안 등 사전 승인(안 제8조)
- 위탁의 취소 및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9조 및 제10조)
- 이용자 또는 수탁자의 재산 피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등(안 제11조)
- 자체 운영 규정 마련(안 제12조)
- 법적근거 : 장애인복지법, 사회복지사업법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11. 20.)

10.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15. 11. 11.
- 제출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- 「건축법」 개정 내용 반영 및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 완화
- 주요내용
 -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 확대 (안 제19조)
 - 검사업무 대행 수수료 현실화 (안 제22조)
 -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 폐지로 관련 조문 정비 (안 제33조)
 -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 완화 (안 제34조)
 -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완화로 군민 부담 경감 (안 제36조)
- 법적근거
 - 「건축법」(법률 제13325호, 시행 2015. 5. 18.)
 - 국민권익위원회 건축사 검사대행 수수료 현실화 권고
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11. 20.)

11.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15. 11. 11.

- 제출자 : 장성군수

- 제안이유

- “장성군 신생아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” 를 “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” 로 개정하여 출산과 신생아 양육에 따른 세부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양육비를 인상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환경 개선

- 주요내용

- 목적과 정의, 지원사업을 명시(안 제3조)

- 출산지원정책 및 인구정책 관련 사업
-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업
-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 등 4개 항목

-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- 첫째아 : 1년간 1,200천원 → 동일
- 둘째아 : 2년간 2,400천원 → 2년간 2,500천원
- 셋째아 : 3년간 3,600천원 → 3년간 4,200천원
- 넷째아이상 : 3년간 3,600천원 → 4년간 10,000천원

- 장성군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8조 ~ 제12조)

- 지원대상, 기준, 신청, 절차, 건강관리 지원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

- 법적근거

- 「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」 제8조, 제9조 및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21조
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11. 20.)

12. 장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15. 11. 11.

- 제출자 : 장성군수

- 제안이유

-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·재활 및 사회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

- 주요내용

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
- 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
- 정신건강증진센터(안 제5조)

- 법적근거

- 「지역보건법」 제9조 및 「정신보건법」 제13조
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11. 20.)

13. 장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15. 11. 11.

- 제출자 : 장성군수

- 제안이유

- 치매환자에게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치매로 인한 개인

적인 고통과 사회적 부담 완화

▪ 주요내용

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지원대상(안 제4조)
- 비용의 부담(안 제5조)
- 그 밖의 건강관리 지원(안 제8조)

▪ 법적근거

- 「치매관리법」 제3조

▪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11. 20.)

14.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▪ 제출일자 : 2015. 10. 30.

▪ 제출자 : 장성군수

▪ 제안이유

-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 개정
- 시설 위탁기간 변경 및 위원회 구성에 소관 부서장 포함

▪ 주요내용

- 행위의 제한 (안 제14조제4호)
 - 전염병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⇒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
- 위원회 구성에 소관부서장 포함 (안 제17조제3항)
 - 총무과장 대신 평생교육센터소장 포함
- 시설의 위탁기간 변경 (안 제23조제3항)

- “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” ⇒ “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. 다만,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할 경우에는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.”

- 법적근거

-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,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11. 20.)

15. 장성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15. 11. 11.

- 제출자 : 장성군수

- 제안이유

- 청소년들의 건전한 수련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축하는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

- 주요내용

- 시설 사용허가(신청, 제한, 취소) 등에 따른 기준 마련(제 2장)
- 수련관 시설사용료 징수 및 감면 규정 등(제 3장)
- 위탁운영 근거 및 수탁자 선정기준, 수탁자 의무 등(제 4장)
- 운영위원회 운영 및 구성(제 5장)
- 수련관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(제 6장)

- 법적근거

- 청소년기본법, 청소년활동 진흥법, 청소년복지 지원법
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11. 20.)

16. 2016년도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계획안

- 제출일자 : 2015. 11. 11.
- 제출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-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연금 지원
- 주요내용
 - 각종 출연금 지원계획

(단위 : 천원)

부 서	출연기관	2016년 출연금	사업내용	관련법령
계	4개 기관	1,644,092		
고용투자정책과	나노바이오센터	380,000	창업보육 및 기업유치,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, 지역전통산업 기업 지원 등	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 조례
재 무 과	한국지방세 연구원	3,092	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 필요 연구·조사·교육 등	지방세기본법 제145조
평생교육센터	(재)장성 장학회	1,261,000	인재 발굴양성 및 교육기반 마련 등	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- 법적근거
 - 『지방재정법』 18조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11. 20.)

17.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

- 제출일자 : 2015. 11. 11.

▪ 제 출 자 : 장성군수

▪ 제안이유

-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해 건립 중인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전문지식과 책임성, 재정부담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도모

▪ 주요내용

가. 위탁범위
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
- 위탁사항
 -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관리(안전점검, 이용시설 등)
 -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인력관리(사회복지사, 재활치료사 배치 등)
 - 프로그램 운영(재활치료, 체험활동 등)

나. 시설현황

- 시설명 : 장성군 장애인 종합 복지관
- 위 치 : 장성군 장성읍 기산리 489-1번지
- 규 모 : 부지 5,420m², 건축연면적 1,504m²(지상 2층, 철근콘크리트조)
- 주요시설

구 분	면 적	세 부 시 설	비 고
1층	777m ²	치료실(언어, 미술, 운동, 심리, 물리치료 등) 상담실, 식당, 사무실, 목욕탕, 보일러실,	
2층	727m ²	주간보호실, 직업재활실(2), 프로그램실(2), 자원봉사실, 다목적 강당, 세미나실, 관장실 등	
부대 시설	-	-건물내부 : 엘리베이터, 화장실, 휴게홀 등 -건물외부 : 태양광발전시설(25KWh), 주차장(25대), 다목적 구장, 파고라 등	

다. 향후 추진계획

-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기준 수립 : 2015. 11.
- 위탁단체 모집공고 : 2015. 12.
- 제안서 서면심사 및 심사위원회 선정심사 : 2016. 1.
- 위·수탁 관련 세부 계획 협의 및 협약서 체결 : 2016. 2.
- 인력채용 등 세부운영 준비 : 2016. 2.
-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: 2016. 4.예정

▪ 법적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-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(위탁대상 사무의 기준 등)

▪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11. 20.)

18. 장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

▪ 제출일자 : 2015. 11. 11.

▪ 제출자 : 장성군수

▪ 제안이유

- 장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

▪ 주요내용

가. 위탁범위

- 위탁방법 : 수련관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
- 위탁사항
 -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(안전점검, 시설대여 등)
 - 청소년수련관 운영 인력관리(청소년지도사 배치 등)
 - 내부 프로그램 운영(학습지도, 체험활동 등)

나. 시설현황

- 시설명 : 장성군 청소년 수련관
- 위 치 : 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110(문화시설사업소 부지 내)
- 규 모 : 부지57,918㎡, 건축2,458㎡/ 지상3층
- 주요시설

구 조	면적(㎡)	층 별	용 도
철 근 콘크리트조	계	2,458㎡	
	지상1층	1,233㎡	사무실, 상담실, 방송실, 북카페 겸 휴게실, 댄스연습실, 밴드연습실, 노래연습실, 기계실, 전기실, 창고 등
	지상2층	875㎡	동아리실, 특성화실, 휴게실, 실내집회장, 체육활동장, 창고 등
	지상3층	350㎡	세미나실, 자치활동실, 창고 등

다. 향후 추진계획

-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기준 수립 : 2015. 11.
- 위탁단체 모집공고 : 2015. 11.
- 제안서 서면심사 및 심사위원회 최종 심사 : 2016. 1.
- 수탁예정자에 대한 청소년단체 여부 등 의견 조회(여성가족부) : 2016. 1.
- 위·수탁 관련 세부 계획 협의 및 협약서 체결 : 2016. 2.
- 인력채용 등 세부운영 준비 : 2016. 2.
- 청소년수련관 개관 : 2016. 3.예정

- 법적근거
 - 지방자치법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 -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
 -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(위탁대상 사무의 기준 등)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11. 20.)

19. 장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15. 11. 11.
- 제출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-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
 - 정비코자 함
- 주요내용
 - 조례명 개정 : 「장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
⇒ 「장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
 - 조례 근거 개정 및 기능 신설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 -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 및 신설(안 제3조)
 - 실무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8조)
- 법적근거
 -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11. 20.)

20. 장성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15. 11. 11.
- 제출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- 향기나는 옐로우시티 조성 및 경관개선
 - 경관형성 및 개선의 운영의 인적, 기술적,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
 - 장성경찰서 제안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반 구축
- 주요내용
 - 조례명 개정
 - 장성군 경관 조례 ⇒ 장성군 옐로우시티 경관 조례
 - 경관사업 대상 확대 및 명확화(안 제8조)
 - 군의 이미지형성 사업, 거버넌스 구성 사업, 경관시책에 따른 사업 등
 - 경관사업의 재정지원 가능사업 확대(안 제11조)
 - 경관시책사업이나 기타 인정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가능
 - 경관협정 가능사항 확대(안 제14조)
 - 경관저해 건축물 외관 개선 및 기타 인정사업 경관협정 대상 확대
 -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(안 제17조의2)
 - 경관협정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근거 마련
 -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시상(안 제17조의3)
 - 경관사업 평가를 통한 계획반영 및 주민 참여유도를 위한 시상
 -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사항 규정(안 제26조 ~ 제29조)
 - 기본원칙, 추진사업, 협력체계, 사무위탁에 관한사항 규정
- 법적근거

- 관계법령 :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
- 의결결과 : 수정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11. 20.)
- 수정안 : 별첨 1

21. 계광·안정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

- 제출일자 : 2015. 11. 11.
- 제출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- 계광·안정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농촌마을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인구 유지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함.
- 주요내용
 - 총 사업비 : 857백만원(국비 70%, 군비 30%)
 - 계속사업비 : 857백만원

기 간	사업비 (백만원)	내 용
계	857	
2015년	169	• 기본계획, 경관계획, 실시설계용역, 토지매입
2016년	339	• 역량강화, 쉼터조성, 건강관리실
2017년	209	• 마을안길 및 담장정비, 지붕개량
2018년	140	• 다목적회관 건립

- 법적근거

-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
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11. 20.)

별첨1

장성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장성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제8조(경관사업 대상 등) 개정안의 9호 일부를 수정하고, 대비표와 같이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8조(경관대상사업 등) 9. ----- 거버넌스 ----- -----	제8조(경관대상사업 등) 9. ----- 민관협력 ----- -----